2010년11월19일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산하회원 여러분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광고선전위원회 위원장

화장품 특기표시에 관한 규칙의 재확인 요청

화장품의 특정성분 특기표시에 대해서는 “화장품의 특정성분 특기표시에 대해”, “화장품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화장품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그 운용을 요청하고 있는 바이지만, 행정당국에서 그 운용에 관해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된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례 중에는 규정 측면에서 보아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품에서의 특정성분 특기표시에 관한 규칙 재확인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특기표시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적절한 표시를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특정성분의 특기표시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래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특기표시는 배합된 성분에 대해서 표시한다.

※ 특기표시는 배합성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며, 배합성분 중에 함유되는 부수물질까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언급할 경우에는 오인이 없도록 충분히 유의해야 합니다)

2. 특기표시를 할 수 없는 성분명칭에 유의한다.

※ 명칭에 “약”이라는 문자가 포함되는 성분 혹은 명칭이 의약품이라는 인상을 주는 성분은 특기표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정경쟁 규약에서는 표시된 배합목적을 초과한 효능효과를 가진다고 소비자에게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성분에 대해서도 특기표시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 특기표시 성분명칭은 일반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 성분명칭은 배합목적의 일반적 명칭으로 기재하며, 다른 명칭(기호, 애칭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명칭을 병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 명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지정성분의 명칭과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동일한 배합성분이라고 일반소비자가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성분의 명칭을 병기한다”고 되어 있듯이, 배합성분의 표시명칭(전성분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4. 특기표시 성분에는 배합목적을 병기한다.

※ 특기성분이 “유효성분”인 것 같은 잘못된 인식을 피하기 위해 배합목적의 병기가 특기표시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식물추출액 등 총괄적인 성분의 경우에는 반드시 배합목적의 기재를 요하지 않는 예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5. 특기표시 성분의 배합목적은 화장품의 효능범위에서 기재한다.

※ 배합목적은 그 효능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실증된 것이며, “화장품에 대한 효능효과 표현의 범위(통지)”의 범위 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